

관련 조항	변경전	변경후	변경 내용
제 5조	신설	제5조 인감,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④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,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인감 또는 서명의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	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5조 4항 수용
제 10조	제10조 지급 · 해지청구 ① 거래처가 통장으로 예금·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,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서명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거래처가 PIN-Pad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에 비밀번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.	제10조 지급 · 해지청구 ① 거래처가 예금·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거나 PIN-Pad기에 입력하고,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서명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	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조1항 수용
	신설	② 거래처가 무통장으로 거래하고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해 본인확인된 경우,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①항에 따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	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조2항 수용
	② 거래처가 자동이체·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	③ 거래처가 자동이체·전산통신기기·바이오정보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	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조3항 수용
	신설	④ 본조 1항에도 불구하고,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닌 예금주에 대해서는 본조 1항의 비밀번호 신고나 PIN-PAD 입력을 생략할 수 있다. 단, 본 조항은 본 변경약관의 시행일 이후의 신규 계좌에 한하여 적용되며, 시행일이전 기존계좌에 대해서는 비밀번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고객에 한해서 적용된다.	법인 예금주에 대한 예외적용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
제 11조	제12조 지급시기 ② 거치식·적립식 예금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.	제12조 지급시기 ② 거치식·적립식 예금은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.	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1조2항 수용

제 15조	<p>제16조 통지방법 및 효력</p> <p>③ 은행은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. 다만,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업무규약 등에 의하여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거래처가 제1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16조 통지방법 및 효력</p> <p>③ 은행은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. 다만,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하여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거래처가 제1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5조3항 수용
제 16조	<p>제17조 면책</p> <p>③ 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 확인하거나 실명 전환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·변조·도용 등을 한 경우,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</p>	<p>제17조 면책</p> <p>③ 은행이 거래처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주의 깊게 본인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위조·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 다만,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.</p>	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6조3항 수용
제 20조	<p>제21조 약관 변경</p> <p>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1항에 의한 게시 2.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3. 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(E-mail)에 의한 통지 4. 현금자동지급기/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5. 거래통장에 표기 6.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의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	<p>제21조 약관 변경</p> <p>※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.</p> <p>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(E-mail) 등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개별 통지한다</p>	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20조2항과 상이
제 22조	<p>제23조 기타</p> <p>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·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, 어음교환업무규약을 적용한다.</p>	<p>제23조 기타</p> <p>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·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, 어음교환소규약을 적용한다.</p>	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22조 수용
제 26조	신설	<p>제26조(위법계약의 해지)</p> <p>금융소비자는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.</p>	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조항 추가